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제도의 이해

-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추진 실적, 효과 및 발전방향을 위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장 | 서 남 교

I.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제도의 도입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그 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시정과 함께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으며, 납품대금 현금성 지급률 개선 등의 결제조건에 있어서도 나름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당국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2006년 말 공정위는 그 동안 추진해온 대기업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기업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과 함께 대기업의 자율적인 범위안 예방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6년 말 공정위는 2007년도 하도급정책의 큰 틀을 ‘대·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시스템 구축과 상생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방향을 잡고, 대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형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세부실천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당시 기업협력국 협력정책팀)는 2007년 초부터 대기업(건설·제조·용역 등 30대 대기업),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및 중소기업(제조·건설 등 업종),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공정위 관계자들이 약 7개월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상생협력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2007년 9월 13일 공정위는 마침내 대·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과 상생협력 및 정부의 지원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대·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 프로그램'(TCP;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이라는 협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기준"이라 한다)을 제정·발표하기에 이른다.

II. 협약의 의의 및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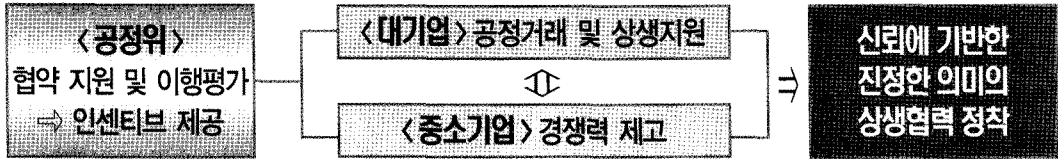
협약은 대기업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주축이 되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춘 상생협력의 파트너로서 거래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추진하고, 공정위(정부)는 협약절차 및 협약내용에 대해 지원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여건을 조성하는 삼각공조 시스템이며, 이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연성규범(Soft Law)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협약은 정부가 대·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체결을 강제하거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도로, 대·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추진되는 순수한 자율규범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협약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정리할 수 있다.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 도입·운용 -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 -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 상생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수단(현금 등) 개선 및 대금 지급기일 단축 - 자금(금융), 기술(개발), 교육·인력 등 지원
중소기업(협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 공정·품질·물류 개선 등 혁신활동 ⊕ 2차 협력사 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절차,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운용 ⊕ 협약내용 승인, 협약절차 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실시 ⊕ 협약 이행 우수 대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 면제(1~2년), 벌점 감경 - 공정거래위원장 등 표창 - 관계 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부여

〈 대·중소기업·정부간 삼각공조(TCP) 모델 〉



참고로,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2006.7.3.)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다양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 부처별 상생협력 추진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부처	중점분야	주요 추진내용
기획재정부	세제 지원, 계약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시 세액공제 등 • 국가발주·구매계약제도 개선 등
지식경제부	상생협력 총괄, 기술·연구·판로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 촉진법 운용 및 제도 개선 • 기술, 연구개발, 자금, 판로 지원 등 • 상생협력 관련 국제회의, 상생주간 행사 개최 등
국토해양부	건설산업, 중소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대·중소기업 공동수주 및 패키지 해외 진출 지원 •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 하도급질서 보호 등
노동부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노사 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투자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개선 추진 • 대·중소기업간 노사 상생협력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확산 • 결제조건 개선, 자금·기술, 교육훈련 등 지원 • 협약우수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혜택
금융위원회	상생협력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대출제도 추진 • 대·중소기업간 상생보증 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육성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납품거래환경 조성(위수탁 실태조사) • 중소기업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지원 등

Ⅲ.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은 대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과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내용을 마련하여 이의 이행약속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기업의 자율적 공정거래 준수 시스템 구축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상생지원방안 마련
 셋째, 중소기업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노력

1. 대기업의 자율적 공정거래 준수 시스템 구축

먼저, 대기업의 자율적 공정거래 준수 시스템 구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대기업의 자율적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은 공정위가 2006년부터 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제정,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하도급 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영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0년 8월 3일, 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해, 그동안 개정된 하도급 관련 법규와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다음은 하도급 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

- 계약 이전단계 : 대기업의 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
 - 계약 체결방식 마련(수의, 일반경쟁, 제한경쟁계약 등)
 - 거래 희망 중소기업 제안 제도 구비 등

- 계약단계 : 중소기업 협력사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계약 체결
 - 서면계약서 교부 및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납품단가 조정협의기준 및 절차 마련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결제조건 결정
 - 기타 관련 법령 위반조항 설정 금지

- 계약 이행단계 :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충실한 계약 이행
 -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행
 - 단가 인하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합의 및 서면 교부
 - 기타 관련 법령의 성실한 준수 등

(2) 협력업체 선정·운영 가이드라인

-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협력사 선정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

- 협력사 선정·운용기준 및 절차의 객관화 및 투명화(공개)
- 협력업체 선정·등록 결과의 통지
- 등록된 협력사에 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

(3)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감시기구를 내부에 설치·운영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사전 예방
 - 하도급(구매 담당) 관련 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
 -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내용, 단가 조정 등에 대해 심의(월 1회 이상)

2.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약속

다음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 금융(자금) 지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해 원자재 구입비 등의 자금을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무상 또는 대여)
 - 직접지원 : 대기업이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대여
 - 간접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해 대출을 알선·중재 (패밀리론 등)
 - 혼합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협력사에게 저리(低利)의 대출을 지원
 - 특별지원 :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의거 신용보증기관에 보증기금을 출연해 대출 (보증)을 지원

(2) 결제조건 개선

-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수단(현금 등) 및 지급기일 단축 등의 개선목표 설정
 - 결제수단 : (예) 현금(성) 결제비율을 35% → 70%로 확대
 - 지급기일 : (예) 마감일로부터 60일째 지급 → 30일째 지급

(3) 기술 지원 및 보호

-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 기술 이전, 연구개발 등의 지원과 협력사의 기술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기술 지원 : 기술 이전, 연구개발 지원, 특허권 허여 등
 - 기술 보호 : 기술자료예치제(에스크로), 공동특허 취득 등

(4)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

- 교육훈련 :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경영·원가 절감·기술혁신·노무교육 등을 지원
- 인력 지원 : 대기업의 종건(기술)인력 등의 무상파견 지원

(5) 기타 상생협력 지원사항

- 투명한 거래장치 마련 : 협력사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및 운용
- 기타 협력사의 경영 지원을 위한 지원 : 원자재 구매 대행, 선금금 지급, 마케팅 지원 등

(6) 2차 협력사 지원

-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원하는 자금, 기술 및 결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2차 협력사로까지 파급될 수 있는 방안 시행
 -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내용을 1차 협력사 평가항목으로 반영, 우수 협력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약속

협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강화하고, 2차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및 결제조건 개선 등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내용의 이행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 절감, 기술개발, 공정·품질·물류 개선 등
- 대기업의 윤리규정 준수 등 부정행위 금지 노력
- 2차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및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의 상생협력방안 시행
- 기타 협력사의 상생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IV. 협약절차 흐름

협약은 [협약내용의 확정 →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의 이행 →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재협약]이라는 단계를 가지게 된다.

이 모든 단계와 절차는 '협약기준'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해 추진하면 어렵지 않게 '협약'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협약의 단계별 절차에 대한 흐름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1. 협약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 도입 여건 분석 및 결제조건 개선, 자금 지원 여력 등 분석 • 협약내용(3대 가이드라인 도입, 자금·기술·교육 지원 및 결제조건 개선 목표 등)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확정
2.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개별 협약을 체결 - 대상 : 협약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 - 기간 : 원칙적으로 1년(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 가능) • 협약 선포식을 통해 대외 공표(대국민 약속 - 이행담보 효과)
3. 협약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에 제시된 지원 및 개선목표 달성 노력 • 공정위의 협약내용 이행 독려(공문, 회의 등)
4. 기간 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체결 후 1년 경과시 협약기간 만료
5. 이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 협약 만료 후 1개월 내 이행평가자료 제출 • 공정위(평가위원회) : 2개월 내 평가 완료
6.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양호'(85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 하도급 직권 및 서면조사 면제(1~2년), 표창
7. 재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이후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해 재협약 체결 • 재협약에 대해서도 신규 협약과 동일한 절차 적용

V. 협약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대·중소기업 간에 체결된 협약기간(통상 1년)이 만료되면 공정위에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가 대기업이 제출한 협약 이행 실적자료를 토대로 서면 및 현장확인평가를 실시하고, 협약내용의 이행도가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협약내용의 이행평가기준,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에 있어서 이행도 우수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인센티브 제공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살펴본다.

1. 협약 이행평가 기준 및 절차

(1) 평가시기 : 협약 체결 후 1년 경과시(협약기간 1년 원칙)

(2) 평가주체 : 협약평가위원회(2009년 1월 9일 구성)

- 외부(6명)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법학교수, 변호사
- 내부(3명) :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하도급총괄과장, 하도급개선과장

(3) 평가방법 : 대기업의 협약 이행 실적자료 점검, 현장 확인 및 협력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 실시

(4) 평가항목 : 협약내용의 충실도(41점), 이행도(49점), 협력사 만족도 등(10점), 범위 반 전력(감점 10점), 사회적 물의 야기(1등급 강등)

※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방법,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협약절차기준)을 정해 사전 공개(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

2. 협약 이행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

협약 이행 평가결과 ‘양호’ 이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서면실태조사 면제, 별점 감경 및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음은 협약 이행 평가결과 등급별 점수와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 별점 감경(3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관계 부처 인센티브 •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이상)
우수	9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 별점 감경(2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관계 부처 인센티브 •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양호	85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 별점 감경(1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관계 부처 인센티브 •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두레넷) 참여 부처 제공 인센티브 〉

부처명	인센티브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별점 감경, 위원장 표창
기획재정부	국책은행의 신용평가 상향, 대출금리 인하 등
국토해양부	시공능력 평가시 또는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
금융위원회	우대보증대상기업으로 선정, 신용등급 상향 조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시 신인도 평가부문 가점 부여(1점)
조달청	정부조달 구매 입찰 심사시 가점 부여(2점)

VI. 협약 추진 실적 및 이행평가 결과

2007년 9월 13일 협약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초로 케이티, 엘지전자, 삼성물산이 협약을 체결(2007년 9월 21일)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15일 현재까지 27개 대기업 집단의 146개 대기업(제조, 건설, 용역, 유통)이 57,890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83개 대기업에 대해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해 52개사에 대해 '양호' 이상의 등급을 부여했다.

1. 협약 체결 실적

그 동안의 협약 체결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6개 대기업이 약 58,000여개의 중소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체결대상에 대한 변화도 나타났다. 종전에는 대기업의 협약대상이 1차 중소기업에 국한됐다면, 올해 상반기부터는 1차 협력사 이외에 2차 협력사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협약 체결 현황 〉

구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0월
대기업	146개	11개	65개	51개	19개
1차 협력사	57,890개	6,754개	20,507개	24,798개	5,731개
1-2차 협력사	14,250개	-	-	-	14,250개

2. 협약 이행평가 결과

2010년 11월 15일 현재까지 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83개사에 대해 협약내용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52개사가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협약 평가대상 대기업의 약 63%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는 점은, 협약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VII. 협약의 효과 분석

2010년 11월 15일 현재까지 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83개 대기업에 대해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세계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유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협약의 효과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공정거래 여건 조성,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동반성장문화 정착 및 2차 협력사 지원효과로 대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1.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공정거래 여건 조성

평가결과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물론 '양호' 이하로 평가받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용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공정거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 및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 서면 계약서 교부,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기준 마련 및 실행, 공정한 협력사 선정과 공평한 거래 개시 부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시스템 운용 등 실질적인 공정거래질서 유지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이 많았다.

2.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문화 정착

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중소기업은 생산효율성 제고, 원가 절감, 품질혁신 등의 역량을 키워 동반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

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대기업의 자금 지원,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보호, 교육훈련·인력 지원 및 기타 지원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자금(금융) 지원효과

대기업이 협약 당시 제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이 약속을 이행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협약평가 완료 83개사의 지원효과 〉

구분	계	자금(금융) 지원	납품단가 인상	자재 구매 대행 등
지원금액 (협력사)	4조1,787억원 (11,013개)	2조6,131억원 (5,298개)	1조1,509억원 (4,745개)	4,147억원 (970개)

(2) 결제조건 개선효과

대기업이 협약 당시 제시한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의 결제조건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제조건 개선효과 〉

결제수단 개선				결제횟수 및 기간 개선			
소계	현금 및 현금성	현금	현금성	소계	횟수 확대	기존 유지	
						월 4회	월 2~3회
62	13	32	17	50	11	11	28

다.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 보호효과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기술 지원,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 보호 등의 협약내용을 대부분 성실히 이행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기술 지원 및 보호효과 〉

구분	기업 수	내용
기술 지원	83개사	신제품 개발, 공동연구개발, 특허기술 이전 등
기술 보호	23개사	기술자료 예치(2), 공동특허권 취득 등

(4)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

대부분의 대기업이 협력사의 임직원에 대한 경영, 원가 절감 및 신공법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파견(인건비 지원)해 협력사의 인적자원 개선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교육훈련 및 인력지원 효과 〉

구분	기업 수	내용
교육훈련	83개사	경영, 회계, 원가절감, 신공법, 마케팅 등
인력 지원	12개사	전문인력 파견(LG전자), 상생인턴 무상파견(SK그룹)

(5) 기타 동반성장 지원

대부분의 대기업이 소속 임직원의 중소기업 협력사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 방지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영컨설팅, 사무자동화, 홍보기법 및 활동 지원, 원자재 구매 대행, 선금금 지급, 생산성 향상, 물류 지원, 에너지 절감, 친환경제품 인증 및 협력사 제품 마케팅 지원 등 해당 업종과 협력사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개선을 원하고 있는 최저가 경쟁입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최저가 입찰차 외에 차저가 입찰자에게도 거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최저가 입찰제의 과당경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등 일부 대기업의 노력이 돋보이기도 했다.

3. 2차 협력사 지원효과

대기업의 1차 협력사(협약 당사자)에 대한 자금, 현금결제 등의 지원효과가 2차 협력사에게 까지 전달되도록 협약서에 반영해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2, 3차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VIII. 협약 확대 등 동반성장 추진대책 이행

공정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협약이 대·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동반성장 여건 조성에 나름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동안의 협약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질서와 동반성장 여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대기업에 대해 철저하고도 공정한 이행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대기업의 협약 참여 유인을 위한 효과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개발함과 동시에 협약기간이 만료된 대기업에 대한 재협약 체결 유도과 공기업 등의 협약 미체결 대기업에 대한 협약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관으로 파주출판문화단지에서 개최된 제1회 '상생협력 워크숍'에서 150여명의 기업 관계자와 학계, 사업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업계의 지대한 관심과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향후 협약의 발전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미 있는 채찍이라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관련 당사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상생협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공정위는 앞으로도 현재까지 추진해온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협약은 물론, 2차 이하의 협력사간 협약 참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기업의 상생지원내용이 2, 3차 이하의 협력사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상생 물꼬뜨기 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9. 29.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발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③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정위는 소관 분야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동반성장전략 및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동반성장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9. 29. 대책 중에서 공정위 소관 분야의 세부추진대책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효과를 2차 이하의 협력사로 확산하기 위한 납품단가 조정내역 통지의무 제도 도입, 대기업의 자의적인 감액 방지를 위한 감액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기술자료 탈취·유용 방지 장치 마련, 2차 이하의 협력사간 거래관계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추진 등의 다양한 거래 개선대책은 그 동안 공정위가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하도급 대책에 일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IX.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협약이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상생협력문화 조성에 나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의 협약 참여 주저와 협약내용의 소극적 이행, 그리고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리 부족도 협약의 성공적인 정착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상생워크숍 논의 내용 중)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대·중소기업의 협약 참여 및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과 더불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협약제도를 창안하고 최근까지 협약실무를 담당해오면서 느끼고 있었거나 업계로부터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피력해보고자 한다.

1. 문제점

○ 협약 이행 평가기준의 비현실성

- 평가점수 비중(34.5점)이 큰 자금지원성 항목의 목표기준이 다소 높아 자금 여력이 좋지 않은 대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 직접성 자금기준(15점) : 매출액의 0.8%로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
 - 결제조건 기준(18점) : 만점 기준이 너무 높다는 비판
 - .. 현금 및 현금성 결제(9점) : 100%시 만점

· 결제횟수 확대 또는 지급기일 단축(9점) : 월 4회 지급시 또는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시 만점

○ **현행 인센티브 내용의 유인성 부족**

-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족
 -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및 위원장 표창 등은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볼 수 있지만, 유인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측면
- 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두레넷) 지원 미약
 - 2006년 당시 11개 부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2010년 9월 현재 6개 부처에 불과(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 **공정위의 협약 관리 미흡**

- 협약 체결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교육 등 미흡
 - 협약에 관심 있는 기업이 많은 편이지만, 공정위의 인력 부족으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 협약 체결 후 만료시기까지 협약내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점검하는 시스템 미비
 - * 공정위 내 협약담당 인원(2명)으로 협약 유도, 협약내용 협의, 협약행사 준비, 협약 이행 독려 및 점검, 이행실적 평가, 인센티브 개발, 관계 부처 협의 등의 효과적인 관리에는 역부족

2. 개선방안

○ **협약 참여 및 이행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 개발 필요**

- 협약 체결이 용이하도록 협약의 문턱을 하향 조정
 - 평가항목 목표 달성기준 및 점수기준 완화 필요
- 협약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홍보자료 배포
 - 기업의 상생 담당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실시
- 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확대방안 조속 마련
 - 2006년 11개 부처가 합의한 두레넷 참여 부처의 유용한 인센티브의 적극 개발 및 적용 필요
-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개발 및 확대 필요
 - 대출금리 인하(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 인하폭 확대

- 시공능력 평가 또는 공공발주 우대(국토해양부) : 가점기준 상향
- 공공구매 평가점수 가산(중소기업청) : 가점기준 상향
- 정부조달 구매입찰시 가점(조달청) : 가점기준 상향 등

○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리방안 강구

- 협약 체결 유도, 협약내용 검토·승인, 협약 체결절차 지원, 협약내용 이행 독려, 이행평가 등 일련의 연속적이고 동시 병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에 비해 실제 담당 인력 절대부족 (5~6명 필요)
- * 대기업을 상대로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대기업을 협약 체결을 결정한 시점부터 협약내용 협의, 협약선포식 준비 등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소요, 이행평가는 평가자료 접수 후부터 서면 평가(1.5개월), 현장 확인(20일) 및 평가위원회 개최, 결재 및 홍보까지 3개월 소요
- 따라서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생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기업협력국 내)
- 상생협약(TCP)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경쟁정책국 소관) 업무를 묶어 동일 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은 '기업협력과'를 설치해 상생협력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

